

의안번호	제426호
의결 연월일	2023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3년 9월 27일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26
----------	-----

발의연월일 : 2023년 9월 27일
발의자 : 박진희, 이동우, 김종필,
김호경, 박지현, 변종오,
유재목

1. 제안이유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충청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 자문을 위한 민관협력자문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점관리대상과 해당 시설의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협의 : 충청북도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라. 조례안 예고 : 예고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충청북도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안전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안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민관협력자문단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안전계획의 수립·시행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해 민관협력자문단을(이하 “자문단”이라 한다)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한 단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단장과 단원은 중대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중점관리대상) 도지사는 충청북도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8조(컨설팅 지원)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민
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

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

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시책을 시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충청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

2. 비용 발생 요인

- 안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한 민관협력자문단 구성·운영(안 제6조)
- 중대재해 대상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안 제8조)
- 충청도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에 대한 비용 지원(안 제9조)

3. 관련조문

- 제6조(민관협력자문단의 구성 등)
- 제8조(컨설팅 지원)
- 제9조(교육 및 홍보)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3년~2027년 (5년간)
- 민관협력자문단 구성·운영 관련하여 자문위원 운영수당 지급
-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 비용
- 현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나. 추계 결과

○ 중대재해 민관협력자문단 구성·운영 : 36,800천원

(단위: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중대재해 민관협력자문단 구성·운영	36,800	2,000	8,700	8,700	8,700	8,700

○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 전문기관 컨설팅 : 210,000천원

(단위: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210,000	-	210,000	-	-	-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100,000천원

(단위: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중대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10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다. 자원조달방안

- 중대재해민관협력자문단 구성·운영 : 도비 100%
-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 전문기관 컨설팅 : 소방교부세 100%
- 중대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22,000	238,700	28,700	28,700	28,700	346,800
민관협력자문단 구성운영		2,000	8,700	8,700	8,700	8,700	36,800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 전문기관 컨설팅		-	210,000	-	-	-	210,000
중대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재원 조달		22,000	238,700	28,700	28,700	28,700	346,800
의존 재원	소 계	-	210,000	-	-	-	210,000
	보전금 (균특회계)	-	-	-	-	-	0
	지방교부세	-	210,000	-	-	-	210,000
자체 수입	소 계	22,000	28,700	28,700	28,700	28,700	136,800
	지방세	22,000	28,700	28,700	28,700	28,700	136,800
	세외수입	-	-	-	-	-	-